

II.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잠재리스크 점검¹⁾

1. 검토 배경
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현황
3. 잠재리스크 및 대응 노력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1. 검토 배경

2022년 4/4분기 이후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²⁾의 자산 건전성이 빠르게 저하되면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신용경계감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2023년 3월초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하 'SVB')의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bank run)가 발생³⁾하자 그간의 신용경계감과 맞물려 미국 중소기업과 규제환경이 유사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⁴⁾의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경계감도 일시적으로 고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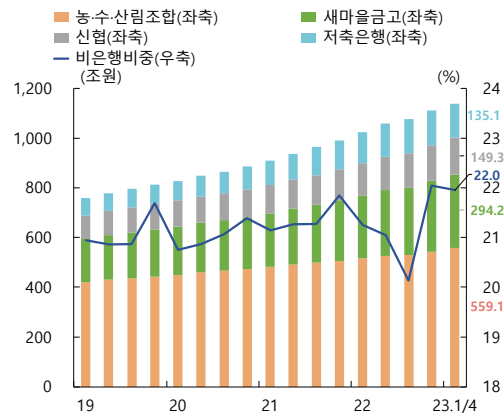
이에 본고에서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현황을 살펴보고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 취약차주 대출, 유가증권 투자 및 유동성과 관련된 잠재리스크를 점검해 보았다. 그리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잠

재리스크가 현재화될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가능성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대응 노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현황

2023년 1/4분기말 기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총자산 규모는 1,137.7조원으로 세부 업권별로는 농·수·산림조합(559.1조원), 새마을금고(294.2조원), 신협(149.3조원) 및 저축은행(135.1조원) 순이다. 은행⁵⁾을 포함한 전체 예금취급기관 대비 비은행 부문의 비중은 2022년 3/4분기중 일시적으로 축소⁶⁾되었으나 2023년 1/4분기말 22.0%로 확대되었다(그림 II-1).

그림 II -1.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자산 규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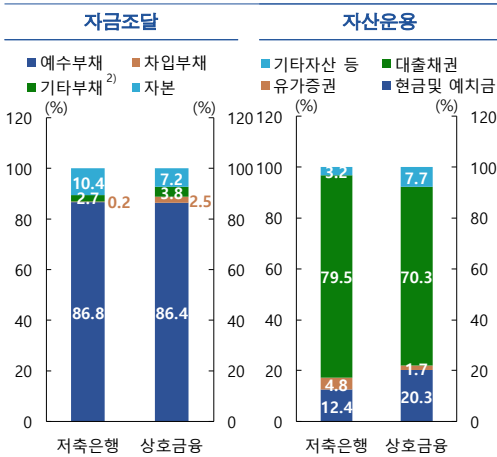


주: 1) 분기말 잔액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 1) 본고는 나성오·송수혁·남승희(비은행리스크팀), 박지수·이영재·염기주·이병호(시스템리스크팀)가 작성, 이종현(금융리스크 분석부장)·신준영(비은행리스크팀장)·임호성(시스템리스크팀장)·우신욱(금융기획팀장)이 검토하였다.
- 2)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 산림조합의 신용사업부문(통칭하여 '농·수·산림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 및 새마을금고를 포괄한다.
- 3) 관련 정책당국의 빠른 대응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제한적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8> 「SVB·CS 사태의 주요 내용과 정책당국 대응사례 및 시사점」을 참조.
- 4)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지만 지역 서민 금융 등 보다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금조달 및 운용 등에서 은행과는 상이한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다. SVB는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국제 기준(바젤 III)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 은행으로서, 우리나라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규제환경이 유사하다. 우체국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포함되나 국영 금융기관이면서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등 상이한 특성으로 인해 본고의 주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5) 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을 모두 포괄한다.
- 6) LCR 규제 비율 정상화 계획(22년말까지 92.5%로 상향 예정이었으나 22년 10월말 정상화를 6개월간 유예)에 따라 시중은행이 고 유동성자산 보유 비중 및 은행채 발행을 빠르게 확대한 것에 기인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에 비해 영위 가능한 업무의 범위가 넓지 않고 여신 취급에 있어 업권 별로 영업구역 또는 조합원 자격 등에 따른 제한이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예수부채를 통해 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하고 이를 주로 대출채권으로 운용하고 있다(그림 II-2).

그림 II -2 업권별 자금조달·자산운용 현황¹⁾



주: 1) 2022년말 기준
 2) 퇴직급여충당부채, 미지급비용 등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3. 잠재리스크 및 대응 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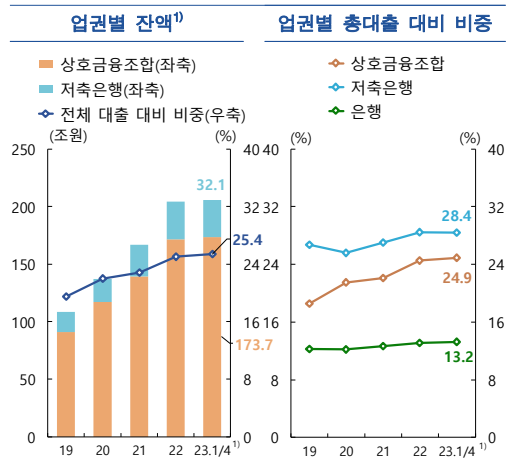
향후 높아진 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연체율 상승, 수익성 악화 지속 등으로 예금취급기관의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신용, 시장 및 유동성 리스크 측면에서 최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잠재리스크를 평가하고 각 업권의 손실 발생 또는 유동성 부족 상황시 대응 여력을 점검해보았다.

가. 신용 및 시장 리스크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 확대 및 건전성 저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2023년 1/4분기말 약 205.8조원(상호금융조합 약 173.7조원, 저축은행 32.1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전체 대출잔액 대비 비중은 2019년말 대비 5.9%포인트 증가한 25.4% 수준이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28.4%, 상호금융조합이 24.9%로서 은행(13.2%) 부문의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그림 II-3).

그림 II -3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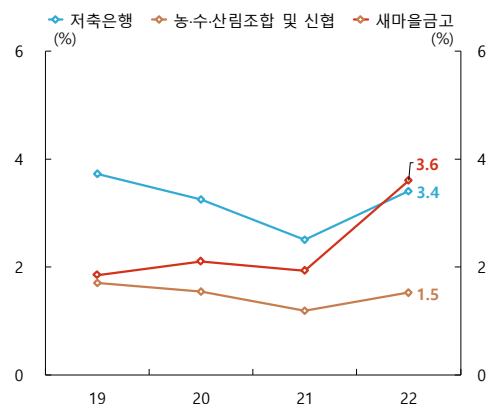
주: 1) 새마을금고는 2023년 1월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시산

7) 특히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복수의 조합이 참여하는 공동대출을 활용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취급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대출은 2개 이상의 단위 조합이 동일 채무자를 대상으로 동일 물건에 대해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담보대출 방식으로서 차주는 개별 조합 수준의 여신 한도를 적용 받지 않고 동일 상호금융권 내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확대된 가운데 부동산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 전반의 건전성도 저하되었다. 2022년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3.6%로 2021년말(1.9%) 대비 큰 폭 상승한 가운데 여타 업권의 연체율도 저축은행 3.4%, 농·수·산림조합 및 신협이 1.5%로 상승하였다⁸⁾(그림 I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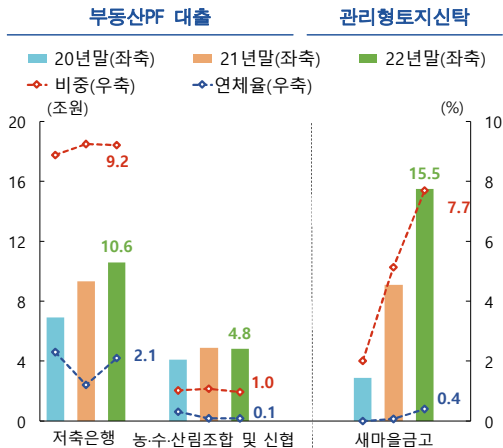
한편 최근 부실 우려가 높아진 부동산PF⁹⁾에 대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잔액은 2022년말 기준 농·수·산림조합 및 신협이 4.8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저축은행은 10.6조원으로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관리형토지신탁¹⁰⁾ 방식으로 취급한 부동산PF 관련 대출이 총대출의 7.7%(15.5조원)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나 연체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¹¹⁾(그림 II-5).

그림 II-4. 업권별 연체율 추이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그림 II-5. 부동산PF 관련 대출 규모 및 연체율 추이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행정안전부 등

8) 2023년 1/4분기말 연체율은 저축은행(5.1%)과 농·수·산림조합 및 신협(2.4%) 모두 증가하였다.

9)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방식이다.

10)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과 사업시행자 명의를 신탁회사로 이전하여 신탁회사가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서 부동산 소유자 및 여타 채권자에 의한 권리 침해 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 시공사 및 신탁사 책임준공 약정을 통해 준공리스크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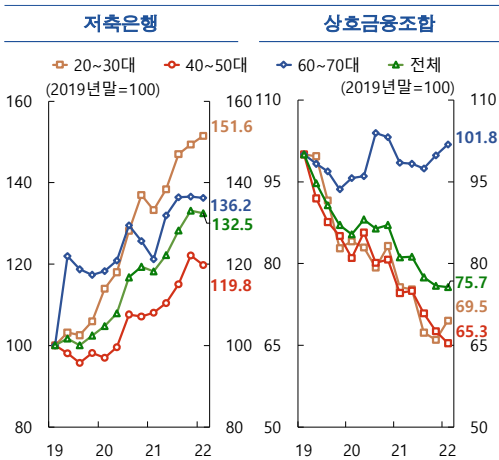
11) 다만 2023년 1월말 기준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잔액과 연체율은 각각 15.8조원과 0.7%로 2022년말 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취약차주 대출 확대

가계부채DB에 따르면 2019년말 대비 2022년말 취약차주¹²⁾에 대한 대출 규모가 저축은행은 증가(+32.5%)하고 상호금융조합은 감소(-24.3%)한 가운데 저축은행의 경우 20~30대 청년층(+51.6%)의 증가폭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이는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태도 강화¹⁴⁾, 비대면 경로를 중심으로 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확대¹⁵⁾ 영향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II-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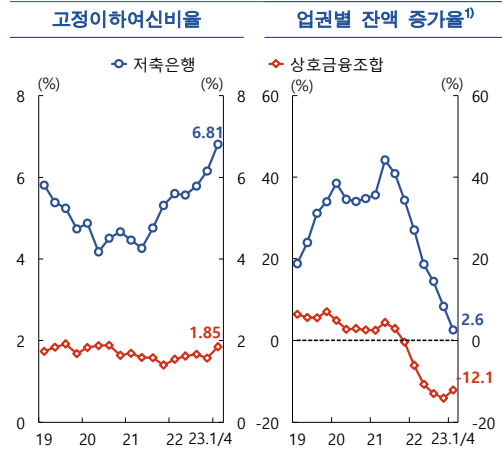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1년 3/4분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여 2023년 1/4분기말 6.81%까지 상승하였다. 다만 가계 부실에 대한 우려¹⁶⁾가 높아지면서 2021년 3/4분기 이후부터는 모든 업권에서 신용대출 규모의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감소로 전환된 모습이다(그림 II-7).

그림 II-6. 취약차주 연령별 대출 규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그림 II-7. 신용대출 건전성 및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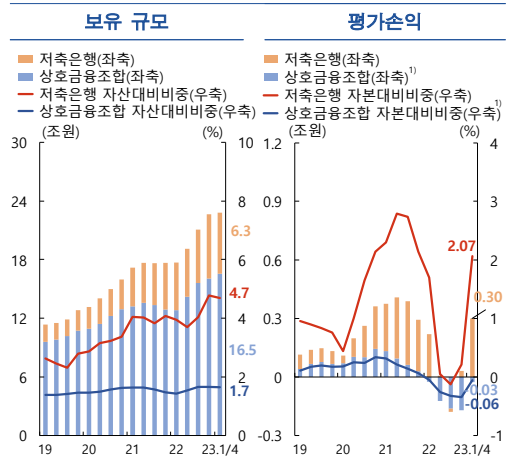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12) 다중채무자(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이용)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이거나 저신용(NICE 기준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로 정의하였다.
13)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중 취약차주 대출 비중은 2022년말 기준 24.7%(전년말대비 1.3%포인트 상승)로 은행권이 낮은 수준(3.3%)을 유지해 온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다중채무자 비중도 저축은행이 77.4%로서 은행(27.3%)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14)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주로 상호금융조합의 대출 태도 강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2022년말 기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신용대출 잔액은 54.9조원으로서 저축은행(27.2조원)과 농·수·산림조합 및 신탁(24.2조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중 비대면 경로를 통한 잔액 비중은 2022년말 34.5%로서 2020년 6월말(23.8%) 대비 10.7%포인트 상승하였다. 한편 가계부채 DB에 따르면 2019년말 대비 2022년말 청년층에 대한 신용대출 잔액은 상호금융조합(-4.9%)은 감소한 가운데 저축은행(85.0%)이 은행(17.0%)에 비해 큰 폭 확대되었다.
16)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0대 이하 청년의 개인회생신청 비중은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6.6%로 전년(45.1%) 대비 1.5%포인트 상승하였다.

유가증권 투자관련 손실은 미미한 수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유가증권 투자는 코로나 19 이후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하락¹⁷⁾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투자 비중 제한¹⁸⁾ 등으로 인해 2023년 1/4분기말 기준 업권별 유가증권 보유 규모의 총자산 대비 비중은 저축은행(4.7%)과 상호금융조합(1.7%) 모두 크지 않은 수준이다. 2022년중 금리 상승 등으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¹⁹⁾이 발생하였으나 저축은행의 경우 3/4분기 이후 이익으로 전환되었고 상호금융조합은 손실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2023년 1/4분기말 기준 자본 대비 미미한 수준(-0.06%)에 그치고 있다(그림 II-8).

그림 II-8. 유가증권 보유 규모 및 평가손익 추이



주: 1) 농·수·산림조합 및 신탁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신용리스크 현재화로 인한 손실 발생이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정적 시나리오²⁰⁾하에서도 모든 비은행 업권에서 자본적정성이 규제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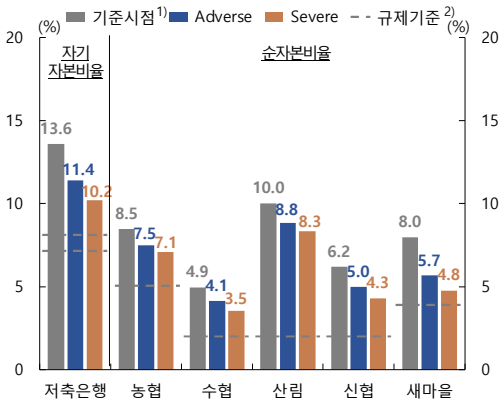
- 17) 한편,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 심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21.7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1.10월) 등도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18) 저축은행의 주식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제한되며 비상장주식 및 회사채 투자도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제한된다(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농협의 경우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유가증권 보유 잔액은 전 영업일 여유자금(총조달액에서 현금,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을 차감한 금액)의 20% 미만으로 제한된다.
- 19)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의 분기말 보유 유가증권의 시가에서 취득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였다.
- 20)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시나리오별 전제치는 향후 1년간 나타날 수 있는 경제성장률 하방리스크(GaR)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전제치

	경제성장률 ¹⁾	주택가격 ²⁾	주가 ³⁾
Adverse	-2.0%포인트(2023년 기준 GaR 10%)	-10%	-40%
Severe	-2.9%포인트(2023년 기준 GaR 1%)	-20%	-50%

주: 1) 전년 동기 대비 2) 최고점(2022년 2/4분기) 대비 3) 최고점(2021년 2/4분기) 대비

그림 II -9. 시나리오별 자기자본비율 변동



주: 1) 2023년 1/4분기말 기준
 2) 저축은행 7%(자산 1조원 이상 8%), 농협 5%, 수협·산림 조합·신협 2%, 새마을금고 4%
 자료: 한국은행 시산

한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신용 및 시장 리스크의 현재화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여타 금융업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시스템 리스크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상호거래를 살펴봄으로써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여부를 평가해보았다.

먼저 상호거래를 대상기관별로 살펴보면 조달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65.0%), 신탁(13.8%), 은행(9.4%), 투자펀드(3.3%) 순이며, 운용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45.0%), 은행(20.0%) 및 투자펀드(10.4%)²⁾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

표 II -1. 대상기관별 상호거래 규모¹⁾

(조원, %)

상대기관	조달		운용	
	규모	비중	규모	비중
비은행예취 ²⁾	213.7	65.0	213.7	45.0
은행	30.7	9.4	95.1	20.0
외은지점	6.7	2.0	6.0	1.3
신탁	45.3	13.8	20.7	4.3
투자펀드	10.7	3.3	49.5	10.4
보험	10.1	3.1	5.2	1.1
증권	7.3	2.2	23.4	4.9

주: 1) 2022년말 기준
 2) 대부분 상호금융조합중앙회와 회원 기관간 거래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다음으로 상호거래를 금융상품별로 살펴보면 조달과 운용 모두 예금(각각 71.7%, 50.8%) 비중이 높다. 특히 조달의 경우 2017년도 대비 채권 비중(0.6%→7.0%)이 증가하였다.²⁾(표 II-2).

표 II -2. 상품별 상호거래 규모¹⁾

(조원, %)

상품	조달		운용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예금	235.7	71.7	241.2	50.8
채권	23.1	7.0	65.6	13.8
대출	20.9	6.4	56.9	12.0
주식 ²⁾	7.0	2.1	49.0	10.3
FP	5.1	1.6	6.1	1.3
파생	3.0	0.9	1.8	0.4

주: 1) 2022년말 기준
 2) 주식에는 투자펀드지분, 주기연계증권(ELS) 등이 포함
 자료: 한국은행

상호연계 통계를 활용하여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신용 및 시장 리스크 관련 손실 발생 충격이 타업권으로 전이되는 리스크를 시산하였다. 구체적으로, 타업권으로 전이되는 손실 규모 및 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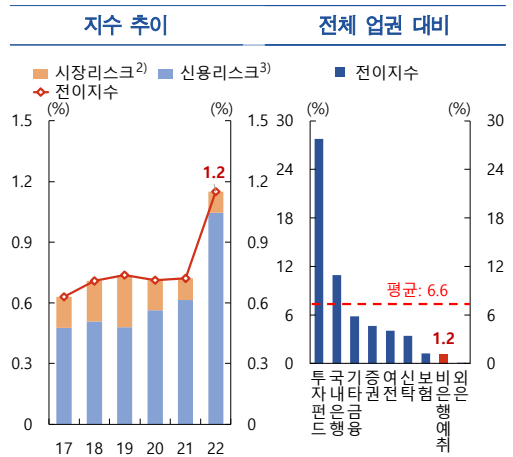
21) 투자펀드 운용 비중이 2017년말 8.1%에서 2022년말 10.4%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상호금융조합 중앙회 등에서 최근 대체투자를 크게 늘린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2) 이는 일부 금융투자 계열 저축은행이 자본확충 등을 위해 후순위채 등을 발행한 데 주로 기인한다.

따른 연쇄손실 가능성 등을 반영한 자본손실 규모²³⁾를 추정하고 전이지수²⁴⁾를 분석해 보았다.²⁵⁾

리스크 산출결과 2022년말 기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전이지수는 1.2%로 2017년말(0.6%)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22년 중 타금융업권이 신탁계정을 통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예치한 자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도산시 신탁계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증대될 수 있어 전이지수가 상승하였다(그림 II-10).

다만 금융업권내 전체 상호거래 규모에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비중(17.6%)²⁶⁾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전이지수는 전체 업권 평균(6.6%)²⁷⁾대비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상호거래의 상당 부분(36.2%)²⁷⁾이 중앙회와 회원 기관간의 거래로 타 금융업권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낮아 연쇄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작은 데다, 영업구조 특성상 부도시 손실률이 낮은 예금의 조달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²⁸⁾

그림 II - 10.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전이지수¹⁾



주: 1) 연말 기준
 2) 도산 업권(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 조달한 단기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이 자산 급매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처분손실
 3) 거래상대방이 도산 업권(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운용하고 있는 자산에 발생한 손실
 자료: 한국은행 시산

나. 유동성리스크

비대면 수신 확대

2023년 1/4분기말 기준 저축은행의 총수신 중 비대면 경로²⁹⁾를 통한 수신 비중은 33.2%(38.5조원)로서, 2022년 3/4분기 이후 빠르게 상승하였다. 이는 저축은행 통합 어플리케이션 출시 등³⁰⁾으로 비대면 거래 편의가 제고된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

23) 도산(손실)자기자본) 업권이 거래 상대 업권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전이하는) 신용리스크(거래상대방이 손실 업권에 직접 투자한 자산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와 시장리스크(도산 업권으로부터 조달한 단기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이 자산 급매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처분손실)를 합산하였다.

24) 전이지수 = $\frac{\text{비은행예금취급기관 도산이 유발하는 타업권 총 자본손실}}{\text{타업권 총 자기자본}} \times 100$

25) 동 분석은 ECB의 「CoMap: mapping contagion in the euro banking sector(Covi et al., 2021)」를 활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 12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금융안정 현안 분석> 「IV. 최근 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추이 및 리스크 점검」을 참고.

26) 금융업권내 전체 상호거래 규모는 3,357.3조원이며, 이중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규모는 589.9조원이다.

27) 금융업권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상호거래(589.9조원)에서 중앙회와 회원기관 등 업권내 규모는 213.7조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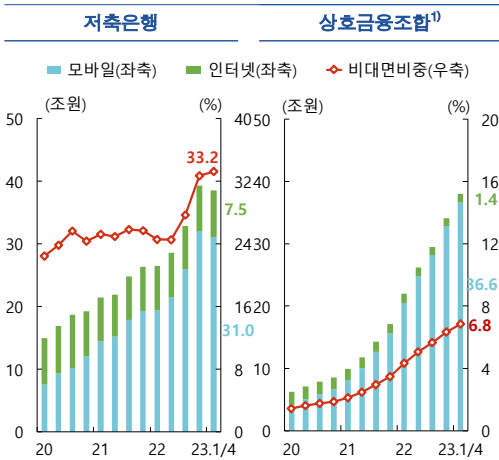
28) 자본손실 산정시 바젤Ⅲ 기본내부등급법상 부도시 상품별 손실률(LGD)를 적용하였으며, 예금의 손실률(10%)이 여타 시장성 조달(채권 45%, 주식 75% 등)보다 낮아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도산이 여타 업권에 미치는 평균 손실률이 여타 업권에 비해 낮다.

29)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입을 의미하며 이중 모바일앱을 이용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 농협 및 신탁)의 신규 수신 비중은 2020년 1/4분기중 63.5%에서 2023년 1/4분기중 90.3%로 증가하였다.

30) 66개 저축은행의 금리 비교, 예적금 가입, 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저축은행 통합 어플리케이션(SB특독 플러스)이 출시(2019년 9월)되었으며,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가 도입(2020년 7월)되었다.

기 예금유치 경쟁이 심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조합의 비대면 수신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수신대비 비중은 6.8%(38.0조원)로 아직 낮은 수준³¹⁾이다(그림 II-11).

그림 II -11. 비대면 수신 규모 및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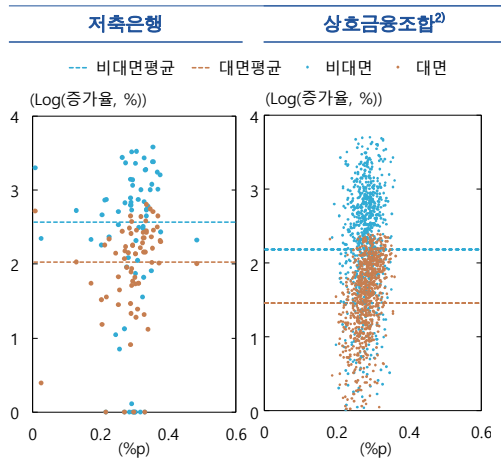


주: 1) 농협 및 신한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각 중앙회

특히 코로나19 기간(2020년 1/4분기부터 2022년 4/4분기) 중 개별 기관의 예수금리 인상폭에 따른 경로별 수신 증가율을 점검해 본 결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농협) 모두 비대면 경로가 대면 경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³²⁾(그림 II-12). 이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는 예금자의 경우 금융 정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확산될 경우에도 여타 예금자에 비해

보다 빠른 속도로 예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II -12. 경로별 수신 증가 속도³⁾



주: 1) X축은 2020년 1/4분기말부터 2022년 4/4분기말까지 매분기별 저축은행 또는 개별 조합의 직전 분기말 대비 예수금리 상승폭의 단순평균(%포인트), Y축은 동기간중 매분기별 각 저축은행 또는 개별 조합의 직전 분기말 대비 예수금 증가율 기하평균(%의 로그값)
2) 농협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농협중앙회, 한국은행 시산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이동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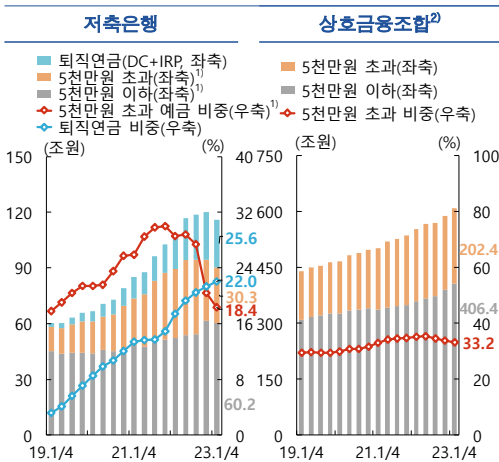
저축은행에 예치된 퇴직연금 규모는 퇴직연금 취급 가능(2018년 9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1/4분기말 기준 전체 수신의 22.0%(25.6조원)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23년 7월부터 DC 및 IRP 퇴직연금³³⁾에 대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³⁴⁾가 시행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사전지정 운용상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만기도래 이후³⁵⁾ 여타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상품

31)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대면 경로를 통해 신용카드 가입, 보험상품 판매 등에 따른 비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대면경로를 통한 예금 모집 유인이 크지 않은 편이다.
32) 저축은행의 경로별 전분기 대비 신규 예금 증가율 평균은 비대면 경로가 17.2%, 대면 경로가 7.8%이며, 농협은 비대면 경로가 10.2%, 대면 경로가 4.7%로 분석되었다.
33) 퇴직연금 자금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이 25.6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적립금 운용책임이 기업에 귀속되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34)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진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디폴트옵션)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22년 7월 12일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시행이 1년 유예되었다.
35)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에 예치된 DC형 및 IRP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의 운용상품과는 달리 가입자별 금액 한도(1인당 5천만원 이내, 예금보호한도와 동일)를 적용하고 있다. 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을 위해 2022년 12월

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그림 II-13).

퇴직연금을 제외한 여타 수신의 경우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액예금 비중이 2022년 하반기 이후 크게 감소하여 2023년 1/4분기말 18.4% 수준이며, 상호금융조합(33.2%)은 동 비중이 저축은행 보다 높지만 은행(81.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II -13. 예금종류 및 규모별 추이



주: 1) 퇴직연금(DC형 및 IRP) 제외
2) 농·수·산림조합 및 신탁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시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경로가 비대면(A그룹) 또는 퇴직연금(B그룹)에 편중되어 있는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예금유출 확대에 따른 유동성리스크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표 II-3).

표 II -3. 저축은행 그룹별 수신 편중도¹⁾²⁾

그룹	비대면 수신 ³⁾	퇴직연금 ³⁾
A	62.7	9.2
B	12.8	55.1
업권 전체	33.2	22.0

주: 1) 2023년 1/4분기말 기준
2) 비대면경로 또는 퇴직연금 수신 비중이 전체 예수금의 50% 이상인 저축은행을 각각 그룹 A와 B로 분류
3) 각 그룹의 총수신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중앙회 유동성 지원 여력 양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지급 준비 또는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각 중앙회에 예수금 일부를 예치하고 있으며, 중앙회는 개별 저축은행, 조합 또는 금고의 유동성 부족 상황 발생시 동 자금을 이용하여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³⁶⁾ 2022년말 기준 각 중앙회가 보유한 예치금과 상환준비금³⁷⁾ 총액은 약 193.9조원 규모로 추정³⁸⁾되며 운용상품은 각 업권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유가증권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II-4).

표 II -4. 중앙회 자산 운용 비중¹⁾²⁾

	현금및예금	유가증권	기타
저축은행	17.6	82.4	-
상호금융조합	6.3	87.8	5.9

주: 1) 2022년말 기준
2) 예치금과 상환준비금 총액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각 중앙회, 새마을금고 공시자료 등을 활용하여 시산

은행, 보험 및 증권사의 총 259개 사전지정 포트폴리오가 승인되었으나 해당 예치 한도로 인해 저축은행 예금은 운용사들의 해당 포트폴리오(최대 3개 상품)에서 제외되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기존 상품의 만기 도래 이후 최대 6주 이내 근로자의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해당 퇴직연금 자금을 사전지정된 포트폴리오로 운용한다.

36) 개별 금융기관은 유동성 부족시 우선 중앙회에 예치한 예치금 또는 상환준비금을 인출하여 유동성 수요에 대응할 수 있으며, 부족시 중앙회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본고의 유동성 지원 여력 점검에서는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 및 상환준비금 전액을 유동성이 부족한 개별 조합 지원을 위해 사용 가능한 것으로 상정하였다.

37) 저축은행의 경우 지급준비자산을 의미한다.

38) 각 중앙회의 재무상태표, 공시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산하였으며 예금자보호기금의 경우 회원기관 파산으로 인한 예금지급 불능 상황에서 사용되는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유동성 지급 여력 평가시에는 제외하였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불안 발생시 업권별 대응 여력을 평가하기 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여력을 점검하였다. 시나리오는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및 예금 인출 규모에 따라 세 가지 상황³⁹⁾을 상정하였다 (표 I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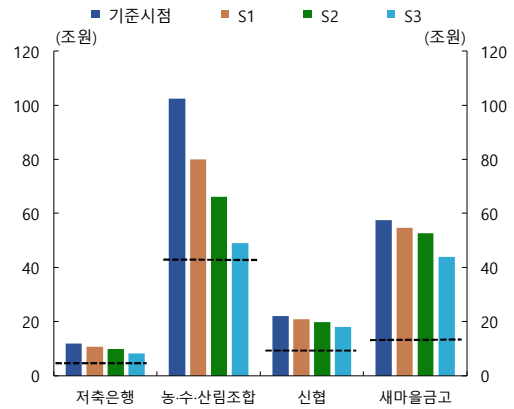
표 II-5. 예금 인출 시나리오

시나리오	S1	S2	S3
대상 기관	각 업권 ¹⁾ 내 자본비율 하위 5% 기관		
규모	50%	80%	
추가인출 ²⁾ 확산	-		5% ³⁾

주: 1) 저축은행, 농·수·산림조합 및 신협, 새마을금고
 2) 업권 전반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인해 여타 기관에도 예금인출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
 3) SVB 사태 전후(2022년 3월 8일과 3월 22일) 미국의 전체 소형은행 예금잔액 감소 규모(4.2%) 등을 고려

대규모 예금 인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대응여력을 점검해 본 결과 각 시나리오 하에서 중앙회 예치금과 상환준비금이 감소하더라도 잔액은 모두 2022년말 기준 상환준비금 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회의 유동성 공급 여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추정된다⁴⁰⁾(그림 II-14). 다만 보유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발생시 유동성 공급 여력이 저하되거나 유동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보유 유가증권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14. 유동성 지원 여력 평가 결과¹⁾²⁾³⁾



주: 1) 2022년말 기준
 2) 각 중앙회의 예치금 및 상환준비금 잔액 합계
 3) 점선은 업권별 2022년말 상환준비금 규모
 (농·수·산림조합은 각 조합별 시산후 결과를 합산)
 자료: 한국은행 시산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꾸준한 성장은 지역금융 수요의 대응을 통해 금융포용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확대되면서 신용리스크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여타 금융업권과의 상호연계성이 높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여력 등을 고려하면 예금 인출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SVB 사태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39) SVB파산 사태 당시 2022.3.9일 420억 달러 이상이 대규모로 인출되었으며, 폐쇄 결정으로 미처 인출되지 못한 1천억 달러를 고려하면 이를 동안 총예금 1,731억달러(2022년말 기준) 중 약 82% 가량이 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다수금융기관에서 동시에 80% 예금이 인출되는 본고의 S2 및 S3 시나리오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0) 2022년말 기준 각 업권의 예수부채 총액 대비 중앙회 보유 상환준비금 비중은 저축은행 4.2%, 농·수·산림조합 9.5%, 신협 6.8%, 새마을금고 5.0% 수준이다.

중앙회가 유동성 공급을 위해 보유 유가증권을 대량 매각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시장 가치 하락을 유발하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예상치 못하게 빠른 속도로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중앙회가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 및 모니터링 수단 확충 방안⁴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사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뱅크런 등으로 중앙회의 일시적 유동성 조달 수요가 급격히 확대될 경우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 체계를 모색할 필요⁴²⁾가 있다.

참고문헌

한국은행(2021), “최근 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추이 및 리스크 점검”, 「금융안정보고서(2021.12)」, pp. 148-159.

Covi G., Gorpe M. Z., and Kok C.(2021), “CoMap: Mapping Contagion in the Euro Banking Sector”, Journal of Financial Stability, Volume 53, April 2021, Article 100814

Financial Stability Board(2017),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Non-bank Depository Institutions”, Chapter 3 in Peer Review of Korea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23), “Nonbank Financial Intermediaries: Vulnerabilities Amid Tighter Financial Conditions”, Chapter 2 in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23(April)

41)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우리나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규제체계에 대한 동료평가(2017.12월)에서 중앙회에 대한 감독 강화를 권고한바 있다.

42) 한편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경우에 대비하여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등이 적절한 상황이나 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IMF의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2023.4월)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금융중개 기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필요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대상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금융기관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대상 기관에 대한 적절한 감독 필요성, 적격 담보의 확대 가능성 등을 언급하였다.